



## 래스롭 시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 방침

#### 1. 목적/배경:

이 방침은 “수도 단수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998호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 116900-116926).

#### 2. 적용:

이 방침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만 해당된다. 래스롭 시의 기존 조례안, 결의안, 방침, 절차를 비주거용 수도계정에 적용하고, 시의 조례안, 규정, 방침을 고객이 위반한 이유로 래스롭 시(“시”)가 서비스 연결을 중단하는 상황 등 다른 이유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적용한다.

#### 3. 방침의 사용

시는 영어와 민사법 1632항에 규정한 언어인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그리고 시의 서비스 지역에 사는 주민이 적어도 10 퍼센트(10%)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 방침을 제공한다. 이 방침은 시의 웹사이트에 있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4. 전화번호:

이 방침의 약관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예방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의 경리부에 (209) 941-7320으로 연락하십시오.

5.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필수적 요건:

- a. 60일 체납기간: 고객이 최소한 60일동안 요금을 체납할 때까지 시는 주거용 수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 b. 통지서: 시는 고객에게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7일 전에 통지서로 연락한다. 통지서는 영어와 민사법 1632항에 나온 언어와 시의 서비스 지역에 사는 주민의 적어도 10 퍼센트(10%)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 방침을 제공한다.
  - i. 요금체납 통지서와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계정에 정해진 우편주소로 보낸다. 만일 우편주소와 거주용 수도를 공급하는 건물주소가 다르면, 서비스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 ii. 중단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 2. 체납 요금
    - 3. 주거용 수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납부나 납부약정이 필요한 날짜
    - 4. 체납요금을 납부하는 시간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5.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를 위한 청원 절차의 설명
    - 6. 납부 연기, 인하, 또는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는 고객을 위한 절차의 설명, 예를 들면 이 방침과 일치하는 주거용 수도 체납요금의 할부약정
    - 7. 시의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경리부 고객상담실 근무시간.

- iii. 시에서 주거용 수도의 임박한 중단을 전화로 대신 고객에게 통보해도 된다. 만일 전화로 통지하게 되면, 시는 이 방침의 복사본을 고객에게 주고 별도납부약정을 제안하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는 대안책과 재고 절차와 고객이 고지서를 항소하는 방법을 의논하겠다고 제안한다.
- iv. 만일 시에서 집에 입주한 성인이나 고객과 전화로 연락하지 못하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지 못해서 돌아오면, 시에서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와 이 방침의 복사본을 주거지를 찾아가서 두고 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는 성실한 노력을 한다.

#### 6. 서비스 복구 정보: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를 중단한 이후, 시는 주거용 수도를 복구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 7. 주거용 수도의 중단에 대한 제한사항:

- a.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 시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 i. 복지제도법14088(b)(A)(I)항에 규정된 바에 의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주거용 수도의 중단으로 생명이 위협받거나 주거용 수도를 공급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증서를 주치의로부터 받아 제출한다.
  - ii.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정산주기에서 고객이 주거용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 1. 고객의 가족 중 누구든지 현재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받으면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정산주기에서 주거용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 a. 쉐워스
      - b. 쉐프레스
      - c. 일반 보조금
      - d. 메디칼

- e. 보충보장소득/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 f.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또는
- g.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퍼센트(200%) 이하라고 신고한다.

iii. 이 방침의 7.b.항에 따라서 고객은 할부납부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 연기나 인하 계획을 맺을 의사가 있다.

b. 별도납부약정

i. 만일 고객이 위에 나온 7.a.항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면, 시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 고객에게 제안한다.

1. 미납요금의 할부납부
2. 대체납부일정에 참여
3. 다른 요율납세자에게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미납요금의 일부분이나 전체 인하
4. 요금 납부의 일시 연기

ii.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은 위의 7.b.i.항에서 규정하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요금납부 방법을 고르고, 요금납부의 범위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제안한 상환납부 방법은 12개월 안에 나머지 미납요금을 완전히 납부해야 한다. 시에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서 고객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환기간을 더 늘려준다.

c. 고객의 의무: 고객은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대한 후속 정산기간에 요금이 누적되면 납부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별도납부약정에 의해서 체납요금을 납부하면서 고객은 후속 미납요금의 상환납부 또는 인하를 추가로 요청하지 못한다. 첫번째 납부약정을 맺은 날짜가 시작하면, 동의한 납부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은 12개월의 기간에 추가 납부약정을 정할 자격이 없으며,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별도납부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후 중단

- i.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시에서 주거용 수도를 중지하는 최종 통지서를 건물에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서비스를 끊어버린다.
  - 1. 고객은 60일 이상 체납된 요금에 대한 상환납부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 연기나 인하계획을 준수하지 않는다.
  - 2. 체납된 요금에 대한 상환납부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 연기나 인하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고객은 현재 수도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8. 집주인-세입자 관계에서 서비스:**

- a. 메스터 계량기가 있는 집주인-세입자 상황의 주거용 세입자/입주자를 위한 통지서  
 보건안전법17008항에 규정된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 파크, 또는 노동수용소의 영구적 거주용 건물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거주용 수도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구조물, 공원의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면, 수도공급을 중단하기 최소한 10영업일 전에, 시는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사실을 통지서로 세입자/입주자에게 알리려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세입자/입주자가 체납된 계정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주소에서 후속으로 주거용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으면, 시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한다.
- b. 세입자/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세입자/입주자가 시의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약정에 동의하고 시의 조례안, 결의안, 규정과/또는 방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는 세입자/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거용 세입자/입주자 중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시에서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혹은 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용 세입자/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세입자/입주자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c. 분리된 단독주택: 분리된 단독주택인 경우, 시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 i. 제안한 중단을 하기 최소한 7일 전에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 통지서를 준다.
  - ii. 체납된 계정의 요금을 면제받으려면, 손님이 되는 세입자/입주자가 임대계약서의 형태로 임대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9.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를 복구하는 추가적 재고 :

- a. 주거용 수도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퍼센트(200%) 이하라고 증명한 경우, 시에서 다음 두가지를 한다.
  - i. 래스롭 시정부법 13.20.020 (E)항에 규정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 ii. 12개월마다 한 번씩 채납된 고지서 요금에 이자를 면제한다.
-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 주거용 수도서비스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퍼센트(200%) 이하라고 간주한다.
  - i. 다음과 같은 보조금의 현재 수혜자
    - 1. 캘웍스
    - 2. 캘프레시
    - 3. 일반보조금
    - 4. 메디칼
    - 5. 보충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 6.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혹은
    - 7. 주거용 수도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퍼센트(200%) 이하라고 신고한다.

## 10. 고지서를 재고하거나 항소하는 절차:

주거용 수도서비스 고객이 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요금을 재고받거나 항소하려면, 고객은 다음 중 한가지를 한다.

### a. 고지서의 재고:

- i. 고객이 경리부에 연락하고 고지서의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ii. 고지서를 받고 오[5]일까지 분쟁의 고지서를 경리부에 보고한다.
- iii. 시에서 고지서를 재고하면서, 시는 고객에게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끊지 않는다.

### b. 고지서의 항소 :

- i. 위에 나온 10.(a)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주거용 수도서비스 고지서를 경리부장에게 항소한다.
- ii. 법안의 항소가 대기 중이면, 시는 고객에게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끊지 않는다.

## 11. 보고하는 필수요건:

시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의 연간 중단 회수를 시의 웹사이트와 주의 수도자원통제국에 보고한다.